# 학회소식

## 1. 정례학술발표회

### 1) 제126회 定例學術發表會

◇ 주관 : 한국법사학회

◇ 일시 : 2018년 10월 12일(금) 오후 2시 ~ 6시

◇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6층 서암홀

〈프로그램〉

**등록 및 개회** (13:50 ~ 14:00)

개회사: 김창록 (한국법사학회 회장, 경북대 법전원 교수)

사 회: 조지만 (한국법사학회 총무이사, 아주대학교 법전원 교수)

**주제발표**(14:00~18:00)

사 회: 서을오(이화여대 법전원교수)

**제1주제**: 로마법상 부권면제자의 재산반입(collatio bonorum)

발표자: 정병호(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제2주제**: 우리 민법상 총유 규정과 특수지역권 규정의 관계

발표자: 김영희(연세대 법전원 교수)

**제3주제**: 담보법상 부종성(Akzessorietat)이론의 연혁적 고찰

발표자: 홍윤선(한국법학원)

### 2) 제127회 定例學術發表會 및 제11회 瀛山法史學學術賞施賞式

◇ 일시 : 2018년 12월 14일(금) 오후 1시 30분~ 6시

◇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

◇ 주관 : 한국법사학회

〈프로그램〉

**등록 및 개회** (13:20 - 13:30)

개회사: 김창록 (한국법사학회 회장, 경북대 법전원 교수)

사 회: 조지만 (한국법사학회 총무이사, 아주대 법전원 교수)

**연구윤리강의**(13:30~13:50)

정긍식(한국법사학회 편집위원장, 서울대 법전원 교수)

**주제발표**(14:00~17:00): **집행법의 역사에 대한 접근**

사 회: 문준영(연구이사, 부산대 법전원 교수)

**제1주제**: 유럽에서 개별집행의 역사

발표: 오정후(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제2주제**: 조선에서 민사집행의 구조

발표: 임상혁(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특별주제**: 법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제한물권계약의 법적 성질

발표: 최윤석(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임시총회**: **규정류 개정의 건**(17:00~17:20)

**영산학술상 시상식**(17:20~18:20)

## 2. 제11회 한국법사학회 瀛山 法史學 學術賞 시상식

2018년 12월 14일(금) 오후 5시 20분에는 제11회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施賞式이 거행되었다. 이 상은 2008년 朴秉濠 명예회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께서 후학을 격려하고 학

회의 발전과 법사학의 진흥과 이를 통한 법문화 창달을 위해 출연한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법사학회가 주관이 되어 2008년 10월 25일에 영산 法史學 學術賞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한국법사학회 회원과 한국고문서학회 회원 가운데 우수학술상과 신진학술상으로 나누어 수여하고, 우수학술상은 격년으로, 신진학술상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회에서는 2008년에 제1회 우수학술상 및 신진학술상 각 1명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신진학술상 2명을, 2010년에는 우수학술상 2명(공동)과 신진학술상 1명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규정대로 시상하였으나, 2017년에는 신진학술상 1명만을 선정하였다. 이번 제11회 한국법사학회 영산 법사학 학술상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는 법사학분야와 고문서학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추천받았으며, 심사위원회에서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상 1명, 신진상 1명을 선정하였다. 수상자, 수상논문, 선정이유 및 수상소감은 다음과 같다.

**1) 優秀學術賞(제21호)**

수 상 자: 李勛相(동아대학교 사학과 교수)

수상논문: 「조선후기 충청도의 營吏와 鄕吏, 그리고 이들의 기록물－충청도 감영의 營房과 향리 사회의 연망에 대한 기초연구－」(고문서연구 제50권[2017. 2])

선정이유

이 논문의 저자는 평생을 향리 연구에 힘써온 학자이다. 이 논문 역시 그러한 일련의 연구와 맥을 함께 할 뿐 아니라 일관된 연구의 성과물이며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성과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향리 연구가 경상도・전라도에 집중되어 온 지역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충청도의 향리 지도의 완성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특히 전국의 도서관이나 연구소 등의 향리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일부 개인 소장 자료를 직접 발굴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감영의 營吏案 등을 중심으로, 수록 인물과 성씨, 출신 지역 등 제반 사항을 분석하여 이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향리 사회의 권력 지형과 지역사 전반에서의 향리의 위상, 지배신분과의 관계 등을 밝히고 신분제 사회에서의 인간군상들의 삶의 양상을 드러내 보였다.

양반 신분 위주의 고문서 연구가 주류인 분위기 속에서 향리 자료를 발굴하고 신분사・사회사・지역사 연구의 지평을 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논문으로 판단되어 이 논문을 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2018년 12월 14일

韓國法史學會 제11회 瀛山 法史學 學術賞

심사위원회 위원장 정종휴

## 수상소감

먼저 이 귀한 학술상을 제게 주시기로 결정한 심사위원 여러 분들 그리고 이렇게 영광스런 자리를 마련하여 준 김창록 회장님 등 학회 임원 여러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더불어 후학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학술상을 마련하여 주신 영산 박병호 선생님에게도 무어라 감사 말씀을 드려야 할런지요.

사실 제가 연구 생활을 한 것은 오래 전의 일이고 그 동안 고문서 등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기에 대한 연구도 집중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응당 박병호 선생님도 자주 뵈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거리가 있는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말해주듯 결과적으로 외롭게 연구 생활을 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이것은 주로 경남 일원, 특히 낙동강과 경남 연안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하고 수합한 고문서 등과 구술 채록에 기초한 것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작업인데, 첫 조사를 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25년 전의 일입니다. 수상 소식을 전해왔을 때 고마움과 더불어 가족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와 연구로 집을 많이 비웠습니다. 종종 아내는 묻습니다. 다른 연구자들과 같이 연구실에서만 할 수 없느냐고. 아내 유제분과 두 아들 이서영과 이찬영에게 진심으로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합니다. 아내는 오늘도 이 자리를 함께 못할 정도로 늘 일이 있었지만, 언제나 저의 조사와 연구가 우선이었습니다. 함께 학문을 했고 덕분에 저의 영감의 원천 중 많은 것이 아내의 각고면려로 얻어진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힙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큰 행운이기도 합니다.

어제 심포지엄의 의제는 기록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의 만남입니다. 통영 거제 일원의 많은 마을에서 1850년 전후부터 기록문화전통이 만들어졌고 이 사실을 반영하듯 많은 문서 등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새로운 문화적 혁신이 세습 무가들이 주도하는 별신굿, 곧 마을 축제와 연동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문화권을 찾아낸 것이고 그 역사적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모아 그 동안의 조사 연구를 보고했습니다.

통영과 거제 일원의 어촌 등을 체류하면서 문서와 무형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여정이 그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제자들의 각별한 노고는 차마 말도 못합니다. 겨울 철 통영 앞바다 죽도에서 목을 파고드는 찬바람은 유독 힘들었습니다. 언제 마무리할지 모르는 작업의 성격상 지원받는 것을 마다했습니다. 덕분에 부산경남고문서총서 21책을 비롯하여 역사 민족지 등 8책을 포함한 29책을 9년 사이에 함께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몇 편의 논문 이상의 공력이 들어간 것들입니다.

편하지 않은 길을 오로지 열정으로 함께 마음을 모은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공교롭게 그 중 다수가 바로 오늘 부산경남사학회에서 발표하므로 모두가 지금 이 시간에 학회 발표장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이 소중한 학술상이 이들에게 수여되었더라면 아마도 제가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어려운 대학 현실, 그것도 지방대학의 연구 환경 속에서 어려운 작업을 마다하지 않은 이들이 정말로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의 지적 여정에서 뒤늦게 만나서 새로운 스승으로서 학문하는 친구로서 긴 기간을 함께 한 인류학자 강신표 선생님께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병든 몸으로 서울에서 일부러 심포지엄에 오셔서 아침 열시부터 밤 아홉시 반까지 함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과의 대화 및 격려는 저의 학문의 일부 이상 이상일 것입니다. 쾌유하셔서 늘 새로운 대화가 이어졌으면 합니다.

돌아가신 에드워드 와그너, 송준호 두 분과의 각별한 만남과 배움도 제게는 큰 자산입니다. 이영훈 선생님께도 감사 말씀 전합니다. 흐트러지지 않을 긴장을, 더불어 학자로서 훌륭한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소중한 연구자와의 만남에서 얼마만큼 많은 것을 터득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저는 이기백 선생님에게 고문서 등 학문 훈련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전 돌아가신 후 어느 때에도 그 엄격한 훈련이 얼마만큼 소중한 자산이 되었는지 이야기 드리지 못했습니다. 수상 소식을 영전에 전하고 싶습니다.

학문의 도정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쳐 마치 오늘 이 큰 영예가 마치 저의 개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외롭게 늘 주변에서 생각하고 작업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숱한 분들의 격려와 베풀어줌 때문입니다. 모두 여기에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저의 각별한 행운은 모두가 이분들과의 만남 덕분입니다.

저의 수상과 관련하여 연구 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충청도 향리가 중요 주제입니다. 향리는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은 데 양반사회는 곧 향리 사회라고 할 정도로 儒와 吏, 官과 吏, 양반과 향리의 이원 통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중 1천년 이상 세습하여 왔던 가문이 적지 않습니다. 양반 가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셈입니다. 이 점에서 언뜻 보아 고도의 안정성을 가진 것 같이 보이는 이 집단에서 근현대 이후 한국의 중요 엘리트들이 다수 배출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저는 근현대 지역사회의 엘리트들의 출자에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엄격한 의미로 조선왕조의 종언에도 불구하고 그 종언의 역사를 돌아보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한국사회와 한국학계는 어쩌면 조선왕조의 양반들의 시각이나 유산을 그래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물을 때가 많습니다. 향리 연구의 어려움은 단순히 자료와 현지 조사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시각과 맞서는 것이 더 큽니다. 여기에 덧붙여 지역사회를 연구할 때 종종 직면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부산 지역 여성사를 하려면 지역사회와 한국을 동시에 공부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언제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경상도 71개 군현의 향리 가문들과 이들 가문에서 배출한 근현대 엘리트들 나아가 전라도 55개 군현의 그것을 현지 조사와 문서 발굴을 통하여 추진하여 왔는데 어느 날 충청도로 시선을 확장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와 황해도도 자료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인데 왜냐하면 경상도와 전라도 일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 과정에서 한 읍의 향리사회에 대한 조사 연구조차 얼마만큼 힘든지 그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무모한 도전을 또 시작한 셈입니다.

그리하여 더 계속해야 할지 자문하던 차에 충청도 향리 연구와 관련하여 오늘 학술상을 받았습니다. 더 도전하라는 엄명인 셈인데 정말 난감하고 곤경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역사에서 버림받았던 이들이 19세기 후반에 던진 절규를 생각하면 제가 행보를 멈추어서는 안 되겠지요. 주변적이어서 잊힌 이들을, 그 역사를 망각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바로 역사가의 중요 책무의 하나일 것입니다.

현지조사와 고문서 발굴 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굳이 시간을 이야기한다면 35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새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쑥스럽지만 처음 공부에 뜻을 두었을 당시 한국학계를 지배하는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미시적으로 검증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를 위하여 직접 문서를 찾아내어 지역사회를 역사적으로 재현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어 내재적 발전론, 달리 말해서 한국사가 근대성에 매몰된 것을 넘어서려 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학계의 지배적인 지적 시선인 내재적 발전론의 도식에 의구심을 가졌고 이것을 지역사회에서 검증하겠다고 한 여정이 어느 덧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심에 의문을 갖게 된 것은 힘겹지만 돌아보면 제가 오랫동안 천착하여 온 주변, 주변성, 주변인, 주변집단은 바로 새롭게 생각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계속 이어진 새로운 문서를 찾아 나서고 많은 이들의 이야기와 다채로운 시각, 다시 말해서 다성성을 모색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준 학회 및 영산 박병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진 학술상을 수상하는 선생님께도 축하드리며 동시에 수상하는 선생님의 성명이 이상훈인 것도 참으로 각별합니다. 이 자리의 동학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14일

이훈상

**2) 新進學術賞(제22호)**

수 상 자: 李相勳(한국법학원)

수상논문: 「부당이득법상 SUUM RECEPIT 논거 검토」(법사학연구 제55호[2017. 4])

선정이유

신진상 수상 논문인 이상훈 박사의 "부당이득법상 suum recepit 논거 검토 -고전기 로마법상 지시 사안을 중심으로-"는 민법의 가장 어려운 연구 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3각 관계에서의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로마법에서 발전한 법리인 'suum recepit'을 검토한 것이다.

이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전반부에서는 로마법에서 'suum recepit' 법리가 적용된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이 법리를 우리 현행 민법과 비교하고 있다.

'suum recepit'이란 '자신의 것을 수령하였다'는 뜻인데, 3각 관계에서 지시인과 지시수령인 사이의 관계인 대가관계가 유효하면 피지시인은 자신이 지시인을 상대로 가지는 항변을 지시수령인을 상대로 원용할 수 없다(지시수령인이 '자신의 것을 수령하였기 때문에')는 의미이다. 즉, 3각 관계에서 대가관계가 유효하다면 비록 보상관계가 부존재하거나 거기에 하자가 있더라도, 선의의 수령자는 대가관계에 기하여 자신의 것을 수령하였으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수상 논문에서 이상훈 박사는 로마법에서 이 'suum recepit'이 사용된 경우들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명쾌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박사는 이 로마법의 법리를 현행 민법의 해결책과 비교하고 있다. 이 박사의 평가에 따르면, 현행 민법과 로마법의 해결책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양쪽의 입장 차이를 결론 부분에 잘 정리하고 있다. 즉, 현행 민법의 급부개념에 기초한 유형설적 해결은 간명한 결론의 제시라는 면에서는 가치가 있

으나 구체적 사안에서 세밀한 이익형량 면에서 미흡하다고 하며, 로마법에서의 논의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요컨대, 이 수상 논문은, 연구 주제의 세밀한 선정, 그리고 선정한 주제에 대한 면밀한 사료와 2차문헌의 검토를 통한 논지의 전개 면에서 매우 탁월하다. 또한, 현행법과의 적절한 연관성을 찾아내고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도, 이 논문이 법사학적 논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현행 민법학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게 한다. 저자의 진지하고도 차분한 연구자세와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영산 법사학 신진상을 수상을 계기로 하여 법사학과 민법학 분야의 중견학자로서 더욱 성장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2018년 12월 14일

韓國法史學會 제11회 瀛山 法史學 學術賞

심사위원회 위원장 정종휴

## 수상소감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영산 법사학 신진학술상'이라는 값진 상을 주신 영산 박병호 선생님, 정종휴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분들, 김창록 법사학회장님과 법사학회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추운 날씨에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와주신 여러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훌륭하신 인품과 학식으로 늘 후학들의 귀감이 되시는 존경하는 박병호 선생님의 호를 딴 상이어서 그런지 저로서는 더욱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지만 총무이사님께서 수상 소식을 알려주시면서 간단한 수상소감을 준비해오라고 하셔서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법사학회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법사학회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때

지도교수님을 좇아서 처음으로 참석한 학문공동체로서의 “학회”였고, 그곳에서 훌륭하신 여러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의 발표와 토론을 보고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사학회는 군복학 이후 지도교수님의 추천으로 첫 발표를 한 곳이기도 하며,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첫 데뷔무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데뷔무대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한 논문이 오늘 수상논문이 되어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수상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나온 로마법 주제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논문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처음 이 주제로 논문을 써보라고 지도교수님이신 최병조 교수님께서 권유해주셨고 부족한 초고에 대해서 따뜻한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회 발표에서는 경북대 박세민 교수님께서 흔쾌히 토론을 맡아주셨고 그 밖에도 논문작성에서 논문투고 및 공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로마법교실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병조 교수님을 비롯한 로마법교실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문 공간 이후에는 민법 교수님들의 논문에서 가끔씩 인용되는 것을 보면서 법사학을 공부하는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학위 취득 후에 여러 바쁜 일들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렸고 그 과정에서 지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상을 주시는 의미가 게으름 피우지 말고 더 열심히 분발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미력이나마 법사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제가 학문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을 때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공분야는 다르지만 학문의 동반자이자 인생의 반려자인 저의 처 김선경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14.

이상훈

## 3. 기타

### 1) 회원동정

(1) 우리 학회의 최병조(서울대 명예교수) 고문이 2019년 4월 1일자로 영산대학교 석좌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2) 우리 학회의 정긍식(서울대 교수) 부회장이 2019년 1월 1일자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에 취임하였습니다.

(3) 우리 학회의 이상훈(한국법학원) 박사가 2019년 3월 19일 제5회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을 수상하고 기념강연회를 가졌습니다[수상논문: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 및 변경」, 『서울대학교 법학』 제59권 제1호(2018)].

(4) 김대홍 회원의 연구서 『조선의 법추론 引律比附』(법사학연구총서 05, 민속원)가 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5) 우리 학회의 최병조(서울대 명예교수)가 『로마법의 향연』(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 2019. 3)을 출간하였습니다. 로마법의 향연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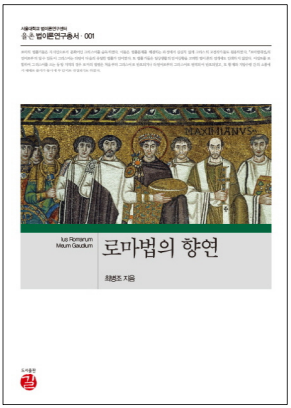


로마법은 서양법과 서양법을 계수한 우리나라 법의 모태이고, 따라서 로마법이 우리나라 법에 대하여 차지하는 의미는 그야말로 본원적이다. 이 책에는 원사료를 통한 본격적인 로마법 연구에 일평생 매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로마법학계를 개척·주도하고 세계 학계에 대표해 온 저자의 최근 10년간의 연구성과가 오롯이 집약되어 있다. 『로마법의 향연』이라는 책 제목은, 국내의 척박한 연구 여건 속에서도 저자가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로마법 연구를 하며 '법학의 원류'를 찾아가는 여정이 언제나 즐거운 '잔치' 같은 기분이었다는 심정의 토로이다(Ius Romanum Meum Gaudium. '나의 즐거움 로마법').

서울대학교 법이론센터에서 기획한 「율촌 법이론연구총서」 제1권으로 도서출판 길에서 출간된 이 책은 저자의 교수 생활 후반기에 공간한 13편의 주옥같은 로마법 논문을 모은 것으로 필자의 네 번째 논문집에 해당한다. 이 책의 구성은 제1부 로마법 일반, 제2부 로마 인법, 제3부 로마 물권법, 제4부 로마 채권법과 민사소송법, 마지막으로 제5부 로마 형사법으로 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고대 로마 법률가들이 수행한 비교법(제1장)과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로마법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제2장) 다룬다. 제2부에서는 로마 인법상 신분변동에 관한 '두격감등'(頭格減等, capitis deminutio)을 다룬다(제3장). 제3부에서는 로마법상 중요한 소유권 취득원인으로 점용취득(usucapio)에 관한 두 편의 글(제4장, 제5장)과 그에 관한 사례 연구(제6장), 그리고 로마법상 부합 법리에 관한 글(제7장)이 수록되어 있다. 제4부에서는 사적자치와 규제주의의 관점에서 조합의 임의탈퇴에 관한 우리 민법과 로마법을 비교한 글(제8장)과 로마법상 소송물 가액선서에 관한 글(제9장), 그리고 로마황제가 주재한 고문회의(consilium)에서 실제 다루어진 '루틸리아나 원상회복 청구사건'(제10장)을 생생하게 재연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5부 로마형사법에서는 로마형법상 사기범죄(제11장)와 문서위조죄(제12장), 그리고 형사피고인의 자살의 문제(제13장)를 다루고 있다. 이 모든 글들은 필자의 탁월한 어문학적·법학적 지식을 토대로 원사료에 기반한 면밀한 분석과 논증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로마법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많은 통찰력과 시사점을 준다.

오늘날 서구법, 나아가 법학의 원류에 해당하는 로마법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류 문명사회의 위대한 유산에 해당한다. 나아가 로마의 법률가들이 후세에 남긴 가장 값지고 모범적인 유산은, 시민이라면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진정한 담론(disputatio fori)의 자리에서 법리를 통한 인생사의 해결에 몰두하는 과정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인간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냉철한 현실주의에 입각한 통찰을 바탕으로, 그러나 온갖 사리사욕과 사회적 폐해로 점철된 세속적 인생사의 한 중심에서도 인간에 대한 이상과 신뢰를 잊지 않고

이성적 논변을 통하여 인간의 삶을 보다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한 로마의 법률가들의 노력은 실로 경탄할 만한 것이다. 인간에 대하여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투쟁하는 인간들을 평화와 정의의 질서를 통하여 법의 인간(homo iuridicus)으로 순치함으로써 살벌하고 적나라한 폭력이 지배하는 혼란스러운 현실 세계를 타파하고 그들이 제도와 법의 틀 안에서 법인격과 권리를 갖춘 주체로서 자율과 자치를 구현하는 세계를 추구한 이들의 노고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법치의 현실태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로마의 법률가들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물론 고대사회가 공유한 노예제 사회라는 부인할 수 없는 한계나 어느 시대 어떤 곳의 인간들과도 다르지 않았기에 법의 이상과는 동떨어진 수많은 부작용과 비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던 로마이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실천했던 법의 진면목이 가지는 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사실 로마 문화의 매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다양한 방면에서 조명되고 재조명되고, 해석되고 재해석되면서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에서 로마법 연구에 대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탁월한 인류 문화유산인 로마법의 진면목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말미에 수록된 사료색인과 사항색인은 전문 연구자는 물론이고 일반 독자의 경우에도 이 책을 활용하고 참조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 2) 법사학회 사이트 활용안내

한국법사학회 홈페이지는 http://legalhistory.or.kr/입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한국법사학회의 각종 소식, 법사학과 관련된 유용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동정이나 법사학과 관련된 소식들이 있으시면 lawhistory@naver.com으로 제보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법제사 관련된 링크는 많이 확보되어 있으나, 서양법제사, 일본법제사, 중국법제사와 관련된 링크는 많이 부족한 형

편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제보로 링크를 확충해 나가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운영위원회

| | |
|---|---|
| 회장 | 김창록(경북대) |
| 명예회장 | 박병호(서울대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
| 부회장 | 정긍식(서울대), 이재룡(충북대), 정병호(서울시립대) |
| 고문 | 서민(충남대 명예교수), 최종고(서울대 명예교수), 정종휴(전남대 명예교수), 최병조(서울대 명예교수), 심희기(연세대), 한상돈(아주대) |
| 기획이사 | 이종길(동아대) |
| 감사 | 이영록(조선대), 임상혁(숭실대) |
| 총무이사 | 조지만(아주대), 손경찬(연세대) |
| 법제이사 | 김영희(연세대) |
| 연구이사 | 서을오(이화여대), 문준영(부산대), 홍기원, 김대홍(숭실대) |
| 정보이사 | 성중모(서울시립대) |
| 섭외이사 | 한승수(중앙대) |
| 편집이사 | 전종익(서울대) |
| 편집간사 | 김준현(서울대 박사과정) |
| 편집위원 | 정긍식(편집위원장), 문준영(부산대), 박세민(경북대), 성중모(서울시립대), 임대희(경북대), 이승일(강릉원주대), 이영록(조선대), 이재룡(충북대), 전종익(서울대), 조지만(아주대), Marie Seong-Hak Kim(St. Cloud State Univ.), 안종철(Tübingen Uni.) |

## 5. 학회비

비정규직 연구자(대학원생 포함): 3만원

정규직: 5만원

기관: 7만원

입금계좌: SC제일은행: 632-20-242388 (한국법사학회)

# 韓國法史學會 會則

(1973. 3. 3 제정, 2016. 10. 15. 최종 개정)

제1조【名稱】 本會는 韓國法史學會(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라고 한다.

제2조【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會長의 硏究室에 둔다.

제3조【目的】 本會는 法史學(韓國法史, 西洋法史, 東洋法史, 로마법, 敎會法, 法思想史) 硏究 및 硏究者 相互間의 親睦을 도모하고 韓國法學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4조【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硏究發表會 및 講演會의 開催
2. 硏究誌를 비롯한 圖書의 刊行
3. 外國學界와의 交流
4. 其他 理事會 또는 總會에서 適當하다고 認定한 事業

제5조【會員의 資格】 本會의 會員은 學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자로 한다.

제6조【會員의 種類】본회의 회원은 다음 二種으로 한다.

1. 會　　員
2. 名譽會員

제7조【會員의 加入】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入會申請을 하고 이사회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名譽會員은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며 本會發展에 寄與한 者로서 總會의 推薦을 얻어야 한다.

제8조【會員의 權利義務】 會員은 學會의 總會 및 각종 事業에 參與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고, 會則遵守, 總會 및 理事會 議決事項의 履行 및 理事會가 정하는 會費納付의 義務를 진다.

제9조【任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인
2. 副 會 長　약간인(2016.10.15. 개정)
3. 名譽會長　약간인
4. 顧　　問　약간인
5. 理　　事　30인 이내
6. 監　　事　2인
7. 幹　　事　약간인

제10조【任員의 選出】 ① 名譽會長, 顧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② 會長과 副會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하며 總會의 認准을 받는다.

③ 理事와 幹事는 會長이 任命한다.

④ 理事와 幹事의 업무분장은 會長이 한다.

제11조【任員의 任期】 會長을 비롯한 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二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있다.

제12조【任員 및 理事會】 ① 會長은 本會를 대표하며 總會 및 理事會를 召集하여 그 議長이 되며 本會의 事務를 執行한다.

② 會長은 理事會의 效果적인 運營을 위하여 理事 중에서 總務, 編輯,

硏究, 法制, 情報, 涉外, 企劃, 國際, 弘報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幹事는 總務幹事, 編輯幹事, 情報幹事 약간 명을 둔다.

④ 名譽會長과 顧問은 理事會 및 運營委員會의 諮問에 응하며, 本會의 各級會議에 參席・發言할 수 있다.

⑤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事業計劃에 관한 事項, 財産의 取得, 管理, 處分에 관한 사항, 總會가 委任한 사항, 會則을 施行하기 위한 規定의 制・改定, 각 分科委員會의 조직 기타 會長이 提案한 學會 運營에 관한 제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제12조의1 【分科】 硏究分科는 本會의 硏究組織으로서 韓國法史硏究會, 로마法硏究會 등을 둔다.(2016.10.15. 신설)

제13조【總會】 總會는 每年 적어도 1回이상 開催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會則의 制定 및 改定에 관한 사항
2. 會長과 副會長의 認准
3. 會計監査結果의 承認

제14조【總會의 議決】 本會의 議決은 出席會員 過半數의 同意로써 한다.

제15조【會計年度 및 監事】 ①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3月 1日부터 翌年 2月 末日로 한다.

② 監事는 會計年度 終了後 監査結果를 總會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는다.

제16조【會員의 懲戒】 ① 學會의 發展을 沮害하거나 名譽를 손상한 會員에 대하여는 會長이 위촉하는 懲戒委員會를 구성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懲戒는 除名, 會員 資格의 停止 및 譴責으로 구분한다.

제17조【學術賞】 ① 本會의 學術研究를 奬勵하기 위하여 學會에 學術賞 制度를 둘 수 있다.

② 學術賞의 管理에 관한 事項은 따로 規定으로 정한다.

제18조【編輯委員會】 ① 本會에 學會誌의 編輯·刊行을 위하여 學會誌 編輯委員會를 둔다.

② 編輯委員會는 編輯委員으로 構成하며, 學會誌에 揭載하고자 하는 論文 審査 및 編輯과 刊行에 관한 전반적인 事業을 管掌한다.

③ 委員會의 構成과 事業에 관한 자세한 事項은 따로 規定으로 정한다.

제19조【研究倫理規定】 研究倫理 등에 관한 자세한 事項은 따로 '韓國法史學會 研究倫理規定'을 두어 정한다.

제20조【會則改正】 本 會則의 改正은 出席會員의 三分之 二 以上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제21조【準則】 本會則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一般學術團體慣例에 따른다.

附 則 本會則은 1973년 3월 3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會則은 1990년 6월 29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會則은 1991년 7월 5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會則은 1997년 5월 3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會則은 2003년 7월 4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會則은 2007년 10월 1일부터 施行한다.

부 칙 본회칙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회칙은 201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韓國法史學會 硏究倫理 規程

2007. 9. 29. 제정
2018. 12. 14. 전면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법사학회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법사학회 회칙 및 간행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논문의 신규성 및 작성원칙

**제3조(논문의 신규성)** "法史學硏究"(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나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新稿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의 논문을 확대발전시킨 것은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의 표절등 금지)** 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 자료등의 중복사용 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인용방법)** ① 논문과 저서 등을 인용할 때에는 "원고 집필 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인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자료는 학술적인 권위가 인정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전자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명기하고, 가급적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3인의 당연직 위원과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연구윤리위반혐의가 있는 투고논문의 관련전공분야 연구이사 중 1인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제7조(제재)** ① 투고논문이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위원회 회부에 대한 1차 심사를 한다. 이 경우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전항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7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서면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없으면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④ 이의를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연구윤리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라고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5년간 본 학회지 투고의 금지
2. 해당 논문 필자의 소속기관에의 결과 통보

## 제3장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제8조(사후심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사후심사의 요건)**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에 대한 검토의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학회지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

물에 게재된 경우

2.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10조(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

① 누구든지 학회지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사후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의 작성은 실명으로 해야 한다.

**제11조(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이사가 개봉한다.

**제12조(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 사후심사요청서에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4장 사후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13조(사후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4조(질의서의 우송)**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연구윤리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제15조(답변서의 제출)** 전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장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제5장 사후심사 결과의 조치

**제16조(사후심사 확정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소집)** 연구윤리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7조(사후심사 결과의 통보)**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후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요청한 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회 홈페이지 및 차호 학회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
2. 학회지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3. 5년간 학회지 투고 금지
4. 해당 논문 필자의 소속기관에의 결과 통보

## 제6장 제보자의 보호

**제19조(제보자의 보호)**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이의 또는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심사를 요청한 사람의 신원에 관해서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제보자 보호 규정의 위반에 대한 조치)**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학회의 회칙에 따라 징계한다.

## 제7장 이의절차

**제21조(이의의 제기)** ① 투고자, 게재자 또는 신청자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 등에 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이의제기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위촉)** 회장은 전조의 이의제기를 심의하기 위한 추천직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단, 판정을 내린 연구윤리위원 등은 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23조(절차)**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판정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체적인 이의절차는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결정의 효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8장 규정의 개정 등

**제25조(규정의 개정)** ①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은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항의 의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18. 12. 14)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規程

(2008. 10. 25. 제정, 2018. 12. 14. 최종 개정)

제1조 (目的) 이 規程은 韓國法史學會(이하 "學會"라고 한다)에서 授與하는 瀛山 法史學 學術賞(이하 "이 賞"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趣旨) 이 賞은 法史學 및 古文書 硏究者들의 진지하고 創意的인 硏究를 독려함으로써 法史學 및 古文書學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趣旨로 한다.

제3조 (名稱 및 種類) 이 賞은 "瀛山 法史學 優秀學術賞(이하 "優秀賞"이라고 한다)" 및 "瀛山 法史學 新進學術賞(이하 "新進賞"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4조 (基金) ①이 賞의 財源은 瀛山 朴秉濠 先生이 出捐한 基金으로 한다.

②學會 會員 등은 위 基金과 별도의 基金을 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賞과 名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對象) ①優秀賞은 學會 會員 또는 韓國古文書學會 會員의 論文으로 한다.

②新進賞은 本學會 會員 또는 韓國古文書學會 會員으로 博士學位 取得日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의 論文으로 한다.[개정: 2018. 12. 14.]

제6조 (審査委員會) ①이 賞의 運營을 위하여 學會 내에 審査委員會를 둔다.

②審査委員會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學會長과 總務理事 및 硏究理事 1인은 當然職 審査委員이 되며 審査委員長은 學會長이 名譽會長 중에서 推戴한다.

④學會長은 古文書硏究者 1명을 포함하여 다른 審査委員을 그 해 6월까지 委囑한다.

⑤審査委員長은 施賞 3개월 이전에 審査委員會를 召集한다.

⑥審査委員長이 有故일 때에는 審査委員 중 最年長者가 委員長의 職務를 代理한다.

⑦審査委員會에서의 決議는 委員 2/3 이상의 贊成으로 한다.

⑧審査委員의 任期는 그 해 年末까지로 한다.

⑨審査委員의 名單은 公開하지 아니 한다.

⑩審査委員에게는 學會의 決定으로 소정의 活動費를 支給할 수 있다.

제7조 (受賞者의 決定) ①優秀賞은 隔年으로, 新進賞은 매년 論文執筆者에게 授與하며, 受賞者는 그 해 11월말까지 決定한다.

②審査委員會는 前前年度 1월 1일부터 前年度 12월 31일까지 2년간 국내외 學術誌에 발표된 法史學 및 古文書 관련 論文 중에서 受賞者를 결정한다. 단 學位論文 및 이를 修正·補完한 論文은 對象이 되지 못한다.[개정: 2014.12.20.][개정: 2018. 12. 14.]

③學會의 會員과 審査委員은 매년 8월말까지 審査委員長 및 硏究理事에게 對象論文을 2편까지 소정의 樣式에 따라 推薦할 수 있다.

④受賞者는 제3항의 節次에 의해 推薦된 論文에 대하여 審査委員 2/3 이상의 贊成으로 選定한다.

⑤제4항의 要件을 충족한 論文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의 受賞者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⑥審査委員會의 議事 및 審査經過는 公開하지 아니 한다.

제8조 (施賞 및 副賞) ①審査委員會에서 受賞者가 決定되면 審査委員長은 적절한 방법으로 受賞者에게 受賞事實과 施賞方式을 通知하며, 그 해의 마지막 定例學術大會에서 施賞式을 開催한다.

②受賞者에게는 賞牌를 授與하며, 副賞으로 賞金을 授與할 수 있다. 賞金의 額數는 審査委員會에서 基金出捐者와 協議하여 決定한다.

제9조 (改正) 이 規程은 審査委員會의 發議로 學會 總會에서 改正한다.

제10조 (補則) 이 規程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學會 運營委員會에서 決定하거나 一般慣例에 따른다.

附則(2008. 10. 25)

이 規程은 2008년 10월 25일부터 施行한다.

단 제1회 受賞者의 決定과 施賞은 별도로 정한다.

附則(2018.12. 14)

이 規程은 총회의 승인일부터 施行한다.

# 法史學硏究 刊行規程

(1999. 7. 19 제정, 2007. 6. 1 전문개정, 2017. 4. 29 최종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韓國法史學會(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 ; K.S.L.H. ; 이하 '학회'로 줄임)의 학회지인 法史學硏究(Korean Journal of Legal History ; K.J.L.H. ; 이하 '학회지'로 줄임)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간행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고자격】

① 학회의 회원(명예회원 포함, 이하 같음)과 정례발표회에서 발표한 비회원은 학회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학회가 지정한 특수한 연구제에 대해서는 비회원에게도 논문 등을 청탁할 수 있다.

제3조【원고】

① 학회지에는 논문, 연구사정리, 번역, 서평, 자료 등을 기고할 수 있다. 자료의 경우에는 해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법사학분야의 연구에 관한 것으로서 학술적 독창성이 있고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기고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학회지의 편집·간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회장은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7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선임한다.

② 편집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회장은 편집위원 선임 및 편집위원장 위촉이 있은 후 열리는 이사회

에 그 선임 및 위촉 사실을 보고하고 각각의 선임 및 위촉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기능】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논문 등의 투고지침, 심사지침 등 편집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학회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3. 논문의 심사 및 편집과 관련된 업무.
4.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단행본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5. 기타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제반 활동.

제7조【편집위원회의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규정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8조【투고원고의 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한다. 다만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학회의 설립취지에 적합할 것
2. 한국 법사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독창성과 학술적 가치를 가질 것
3. 기타 투고 및 심사를 위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것.

②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그 심사등급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하지

않음"으로 나눈다.(2008. 9. 1. 개정)

③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투고자는 이에 응하거나 서면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수정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원고가 수정 투고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재심사하여 "게재", "게재하지 않음"으로 결정한다.(2008. 9. 1. 개정)

제9조【학회지의 발간일】학회의 정기 학회지인 "법사학연구"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일자는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한다.

제10조【학회지의 배포와 기증】

① 간행된 학회지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

② 전항의 배포본 이외에 논문 등의 게재자에게 학회지 2부와 별쇄본 10부를 증정하며, 10부 이상의 별쇄본은 제작 실비를 게재자가 부담한다.(2017. 4. 29. 개정)

제11조【논문 등의 게재비】

① 논문 등의 게재자는 게재비 규칙에 따라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 등의 게재비의 기준에 대한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정한다.

제12조【저작권 등】

①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13조【학회지의 전자출판】

① 학회는 서적인쇄에 의한 학회지의 발간과 병행하여 전자출판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학회지를 발간할 수 있다.

② 학회지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학술목적을 위한 게재논문이용】 학회는 법률문화발전과 학술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자도서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학회지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부 칙 (1999. 7.19.)

이 개정 규정은 제20호 발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9년에는 법사학연구 제20호를 발간한다.

부 칙 (2007.6.1)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1)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29)

이 개정 규정은 법사학연구 제56호부터 시행한다.

# 法史學硏究 投稿 및 審査指針

(2007. 6. 1 제정, 2008. 5. 1, 2008. 9. 1.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法史學硏究 刊行規程 제7조 제6항 및 제9조에 규정한 "法史學硏究"(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원고모집 및 투고, 투고원고의 작성방법,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고자격】

① 학회의 회원(명예회원 포함, 이하 같음)과 정례발표회에서 발표한 비회원은 학회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학회가 지정한 특수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비회원에게도 논문 등을 청탁할 수 있다.

제3조【투고원고】

① 학회지에는 논문, 연구사정리, 번역, 서평, 자료 등을 투고할 수 있다. 자료의 경우에는 해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투고원고는 법사학분야의 연구에 관한 것으로서 학술적 독창성이 있고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한다.

제4조【투고원고의 작성방법】

① 투고자는 이 지침 및 원고 집필 요령에 따라 투고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국한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된 초록과 주제어를 붙여야 한다.

③ 원고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국문초록을 붙여야 하며, 학술적 가치가 큰 외국어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문을 국한문으

로 번역한 원고를 같이 게재할 수 있다.

④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투고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논문의 목적상 기준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게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원고모집의 공고】

① 편집위원장은 매년 6월 및 12월 중에 각 회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학회지의 원고를 모집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원고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② 원고모집을 공고하는 때에는 투고절차, 원고 집필 요령, 심사기준 및 절차, 학회 윤리규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원고의 제출 및 접수】

① 투고자는 원고마감기한(상반기 2월말, 하반기 8월말) 내에 학회의 편집이사 또는 간사에게 투고신청서와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고원고는 원고 집필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원본파일과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용 파일 2개를 전자매체기록장치(플로피디스켓, CD-Rom, 기타 외부저장장치)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③ 편집간사는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④ 편집간사는 투고자의 인적사항, 논문제목, 접수일자, 분량 등을 기재한 접수결과표를 작성하고 투고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가 원고 집필 요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원고 송부】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원고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원고를 송부한다.

②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③ 심사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④ 투고논문이 본 학회의 윤리규정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는 개별적인 심사 없이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제8조【투고원고에 대한 심사】

①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하고 투고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투고원고를 심사한다.

1. 논문 : 주제설정의 창의성, 주제설정의 적실성, 연구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해당 분야에 대한 학문적 기여도, 기존참고자료의 조사 및 반영여부, 원고 집필 요령의 준수여부
2. 번역 : 번역의 필요성, 번역의 정확성 및 학문적 기여도
3. 자료 및 그 해설 : 자료의 학술적·사료적 가치, 자료소개의 필요성, 해설의 학술적 완성도, 해설의 학문적 기여도
4.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전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심사위원은 총평과 함께 투고논문에 대하여 “게재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하지 않음”의 의견을 낸다.(2008. 9. 1. 개정)

제9조【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는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편집회의에 보고하고, 편집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고원고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편집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투고원고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2008. 9. 1. 개정)

1. “수정 후 게재”는 일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게재”에 해당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권고한다.(2008. 9. 1. 개정)
2. “수정후 재심사”는 일주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폭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게재하지 않음”에 해당한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2008. 9. 1. 개정)
3. 게재여부는 3인의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2008. 9. 1. 개정)
4. 심사위원중 1인이라도 “수정 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하지 않음” 의견을 낸 경우, 편집회의의 심사판정에 회부한다.(2008. 9. 1. 개정)
5. 편집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부된 원고에 대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하지 않음”의 판정을 내린다.(2008. 9. 1. 개정)

④ “수정후 게재” 판정에 따라 수정된 원고에 대한 심사는 편집위원장이 직접 또는 약간의 심사위원에게 위임하여 게재의 가부를 판정한다.

⑤ “수정후 재심사” 판정 한 때에는 그 결과와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통지하여 1주일 이상의 수정기간을 부여한 후, 수정된 원고를 제출받아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게재의 가부를 판정한다.(2008. 9. 1. 개정)

⑥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보고서와 편집위원회의 심사결과서는 보관하여야 한다.

⑦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한다.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결정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② “수정후 재심사”, “게재하지 않음”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2008. 9. 1. 개정)

③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 또는 “불가”의 결정을 한다.

제11조【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① “게재”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2008. 9. 1. 개정)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① “게재”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2008. 9. 1 개정)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에는 투고일자, 심사개시일자, 게재확정일자를 표기한다.(2008. 5. 1. 신설)

제12조【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편집위원장은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학회지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조【게재료 납부】학회지에 게재하기로 결정된 논문 등의 투고자는 본 학회에서 정하는 게재비규칙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투고자격의 제한】

①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회는 전항에 위반한 투고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일정기간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게재논문의 전자출판】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전자출판과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른다.

부 칙 (2007. 6. 1)

이 지침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1)

이 지침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1)

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揭載費 規則

(1999. 7. 19 제정, 2017. 4. 29 최종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法史學硏究刊行規定 제9조에 의한 논문 등의 게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도】 게재비는 법사학연구의 간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고자는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연구비를 지원받고 수행한 연구결과의 발표
2. 조판 쪽수가 목차, 외국어 초록 등을 포함하여 40쪽이 초과한 논문
3. 정례발표회에서 발표하지 않은 논문

제4조【게재비】 게재비는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① 제3조 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비의 10% 이내에서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41쪽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2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1. 41~45쪽 : 10만원
2. 46~50쪽 : 20만원
3. 51쪽 이상: 30만원

③ 제3조 제3호의 경우 전임교수 및 실무가는 30만원, 그 외의 자는 1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41쪽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규칙 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부칙 (1999. 7. 19.) 이 규칙은 법사학연구 제20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4. 29.) 이 규칙은 법사학연구 제56호부터 적용한다.

# 원고 집필 요령

## Ⅰ. 원고 집필 요령

1. 모든 원고에는 맨 처음에 제목과 필자를 기재하며, 필자의 소속기관과 직위 및 이메일주소를 필자명에 붙인 각주로 처리하여 기재한다.

2. 장절항목의 번호는 Ⅰ. Ⅱ. Ⅲ. → 1. 2. 3. → 1), 2), 3) → (1), (2), (3)의 순서로 표기한다.
   * 머리말과 맺음말에도 Ⅰ. 등의 번호를 붙인다.

3. 필자명 다음에 장(Ⅰ. Ⅱ. Ⅲ.)과 절(1. 2. 3.)의 목차를 기재한다.

예)

목 차

Ⅰ. 머리말
Ⅱ.
  1.
  2.
Ⅲ.
  1.
  2.
Ⅳ. 맺음말

4. 목차 다음에 [국문요약]과 [주제어]를 기재한다.
   1) [국문요약]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5매 전후로 한다.
   2) [주제어]의 개수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주제어] 다음에 본문을 기재한다.
   1) 본문은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양어는 한자로 표기하며, 고유명사는 맨 처음 표기할 때 원어의 음을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며, 이후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3) 서양어 및 한자 이외의 동양어는 번역하여 사용하며, 고유명사는 맨 처음 표기할 때 원어의 음을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하며, 이후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4) 인용할 때에는 " "를, 강조할 때는 ' '를 사용한다.
5) 긴 문단을 인용할 때에는, 문단의 전후에 1행을 띄우고 좌우 들여쓰기를 하여 인용할 수 있다.

6. 본문 다음에 〈참고문헌〉을 기재한다.

7. 〈참고문헌〉 다음에 영문의 [Abstract]와 [Key Words]를 기재한다.
   1) [Abstract]의 분량은 400 단어 전후로 한다.
   2) [Key Words]의 개수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8. 기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Ⅱ. 문헌 인용 방법

* 모든 원고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문헌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국내 및 동양 문헌 인용법
   1) 저서
      (1) 저자, 『서명』(출판지 :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단, 국내서는 출판지를 생략한다)
          예 : 朴秉濠, 『근세의 법과 법사상』(진원, 1996), 100면.
      (2) 반복되는 경우 : 저자, 앞의 책, 면수.
          예 : 朴秉濠, 앞의 책, 110면.

(3) 직전 각주에서 인용한 경우 : 저자, 위의 책, 면수.
예 : 朴秉濠, 위의 책, 110면.
(4) 동일 저자의 여러 책 중 반복되는 경우 : 저자, 앞의 책(각주 **), 면수.
예 : 朴秉濠, 앞의 책(각주 10), 110면.

2) 논문
(1) 필자, 「논문제목」, 『게재지명』 호수(발행처, 발행연도), 면수.
예 : 南興祐, 「日帝의 韓國侵略에 있어서의 法規範과 그 適用에 관한 問題」, 『亞細亞硏究』 12-1(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1969), 49면.
(2) 반복되는 경우 : 필자, 앞의 글, 면수.
예 : 南興祐, 앞의 글, 50면.
(3) 직전 각주에서 인용한 경우 : 필자, 위의 글, 면수.
예 : 南興祐, 위의 글, 50면.
(4) 동일 저자의 여러 논문 중 반복되는 경우 : 필자, 앞의 글(각주 **), 면수.
예 : 南興祐, 앞의 글(각주 10), 50면.

3) 사료의 경우에는 필자가 특정하기 위해 "《 》", "〈 〉"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서양 문헌 인용법
1) 저서
(1) 저자, 서명(출판지 :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 Paul Brand, *The Origins of the English Legal Profession* (London : Blackwell, 1992), p.100.

(2) 반복되는 경우 : ibid, op. cit, 등 각국의 관례에 따른다.

2) 논문

(1) 필자, "논문명", 게재지명(발행처, 발행연도), 면수(게재지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 Richardson, J. S., "Lex Calpurnia de repetundis", *Journal of Roman Studies* 77(1987), pp.1-12

(2) 게재지 명칭의 약칭은 각국의 관례에 따르되,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3) 면수는 각국의 인용예에 따라 p., S. 등을 사용한다.

(4) 반복되는 경우 : *ibid*, *op. cit*, *a.a.O.* 등 각국의 관례에 따른다.

**[編輯委員]**

편집위원장 정긍식

편 집 위 원 전종익
박세민
문준영
성중모
안종철
이영록
이재룡
임대희
임상혁
조지만
Marie Seong-Hak Kim

편 집 간 사 김준현

**法史學硏究 第 59 號** 값 ♣,000원

인 쇄 일 : 2019년 4월 25일
발 행 일 : 2019년 4월 30일

편 저 자 : 한국법사학회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 연구실
전화 (053) 950-6936
전송 (053) 950-6884
발 행 인 : 홍종화
발 행 처 : 도서출판 민속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25길 41(대흥동 337-25)
전화 (02)804-3320, (02)805-3320, (02)806-3320
팩스 (02)802-3346

ⓒ 2019, 한국법사학회